

영국 안전보건청(HSE), 제3차 단순화 전략 진행보고서 발표

영국 안전보건청(HSE)에서는 2005년부터 단순화 계획(Simplification Plan)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제3차 단순화 전략의 중간 보고서 발표를 통해 현재 단순화 전략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다.

HSE 단순화 계획(Simplification Plan)은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문서 작업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HSC/HSE 내부의 결정에 따라 행정부담(비용)을 25% 이상 감소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Public Service Agreement)

HSE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산업재해예방 행정비용 감소로 산업 및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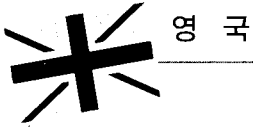
HSE 단순화 계획(Simplification Plan)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 및 기준을 개정하여 HSE의 규제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및 질병을 더욱 줄여 나가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HSC의 “2010 산업안전보건전략”과 병행하여 복잡한 안전보건업무 관련 행정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예방 관련 비용을 줄여 나가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영국 안전보건청에서는 HSE 단순화 계획(Simplification Plan)을 통해 업계, 근로자 및 각종 이해관계자 등의 협력을 통해 안전보건개선과 관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안전보건경영을 통한 이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해하기 쉽고, 준수가 용이한 법규제도 확립 ▲근로자 및 공공보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한 법규제도 확립 ▲업계의 안전보건활동 및 규정준수 의지 확립을 위한 법규제도 개정 등이다.

영국 HSE에서는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산업보건동향



영국

HSE 단순화 계획(Simplification Plan) 2008년 주요 성과 요약

관련분야 및 수행사항	간소화를 통한 예상 경제효과	진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위험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준수율 증대 및 간소한 지침 개발 - 균형 잡힌 위험성평가 및 관리 촉진 	2억 파운드 (원화 약 4,100억원)	- 일부 완료 및 2009년 추가 평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관련 기구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안전과 관련한 규제제도 재검토 - 가스안전 점검에 대한 일반 사항 	5,900만 파운드 (원화 약 1200억원)	- 2010년 5월 변경사항 적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 작업 및 운반설비 관련 규정 개정 및 작업도구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검토 활동을 통한 명확한 신규지침 개발 - 규정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연구 실시 	3,300만 파운드 (원화 약 594억원)	- 완료 - 2009년 최종 평가 실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관리규정(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가지 석면 규정 통합 및 직물장식코팅 작업에 대한 허가제도 폐지 	2,770만 파운드 (원화 약 567억원)	-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안전보건정책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언서 포맷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 	2650만 파운드 (원화 약 542억원)	- 개발 작업 완료 - 신규 위험성 평가 전자파일 양식과의 통합으로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법 포스터 관련 규정 개정 	1,030만 파운드 (원화 약 216억원)	- 2009년 4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DDOR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재해 발생시 보고 시간 단축 	1,660만 파운드 (원화 약 339억원)	-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계 및 관리) 규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현장 고지요건 명확화 및 단순화 	360만 파운드 (원화 약 73억원)	-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유해 위험물질 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비용 감소 및 관련 지침의 개선 및 합리화 추진 	1,100만 파운드 (원화 약 225억원)	- 2007년 단순화 계획 중 미실시 - 2009년 완료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관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종의 구 양식 관련 규정 폐지 및 법적사항이 아닌 HSE의 관련 양식 54% 폐지 	2,125만 파운드 (원화 약 435억원)	- 2009년 4월까지 양식 관련 규정 개정 및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참여에 대한 우수사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대표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에 대한 요건 명확화 	366만 파운드 (원화 약 751억원)	- 일부 완료 - 2009년 중 평가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평가 템플릿(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E의 효율적 위험성 관리와 연계하여 추가 작업 진행 	향후 추산 예정	- 2009년 4월까지 실시 예정



영 국

HSE 단순화 계획(Simplification Plan)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05년 5월-2010년 5월(5년간)

- 추진방법

- 2005년 5월 현행 법률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 총액을 추산[행정 부담 측정시험(ABME)]하여 목표 설정
- 근로자의 안전은 유지하면서 규제개선 노력을 통하여 행정부담 25% 감소목표 달성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단순화 전략의 지속적인 보완
- EU지침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야는 2010년 5월까지, 유럽내 협상이 필요한 분야는 그 이후까지 절감

* 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ABME : Administrative Burdens Measurement Exercise

* RIDDOR :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 EU : European Union

〈출처〉 <http://www.hse.gov.uk/simplification/index.htm>

후생노동성, 과로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시간 근로 억제 캠페인 전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이에 수반하는 과로사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11월을 「근로시간 적정화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주 단체에 대한 협력 요청, 근로시간 전화상담실 운영 등 장시간 근로억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10.3%에 이르는 등 장시간 근로의 실태가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뇌심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과로사 관련 재해인정 건수가 392건에 달하는 등 과로에 의한 건강 장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근로시간 적정화 캠페인」을 통해 과도한 업무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임금 미지급 잔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노동조합, 산업보건관리자 등 모든 관계자의 인식 및 노사가 일체된 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후생노동성은 장시간 근로의 억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11월에 「근로시간 적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근로시간 적정화 캠페인」은 2008년 11월 1일(토)-11월 30일(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며,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 시간외 근로협정의 적정화 등으로 시간외·휴일 근무 억제
- 시간외 근로협정은 법에 의한 연장한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협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연장의 한도 등에 관한 기준」
- 건강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비하고 건강진단 등을 확실히 실시할 것
- 장시간에 걸친 시간외·휴일 근로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면접지도 등을 실시할 것
- 임금 미지불 잔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시간 적정과약기준을 준수할 것



본 문

「근로시간 적정화 캠페인」을 통해 각 사업장에 대해서 장시간 근로 억제 캠페인에 관한 참여 및 적극적인 추진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전국 수신자 부담 「근로시간 상담 다이얼」을 설치하여 각 지방노동국의 담당관이 장시간 근로억제 등을 위한 전화상담을 실시하였다.

과로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장시간 근로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면담을 실시하고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장시간에 걸친 작업으로 피로가 축적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하역금 의사에 의한 면담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출처〉 <http://www.mhlw.go.jp/bunya/roudoukijun/anzeneisei12/index.html>